
◆ 政府 施策 ◆

자본재 產業에 7兆 지원 – 통산부, '96년 자본재산업 지원계획 확정 –

정부는 '96년중 자본재 산업육성을 위해 외화대출 자금 2조4천억원등 총 7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산 기계류·부품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에 제2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제3회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6년 자본재산업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통신부는 지난해 자본재산업부문에 연불수출지원 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등 모두 3조9천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96년중엔 지원규모를 7조6백억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주요 부문별로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자금 3조4천2백억원 △기계류할부금용 5천억원 △사업기술개발자금 2천억원 △工高증설등 기술교육지원 1천5백억원등이다. 통산부는 또 기계류·부품의 대형 국제전시회를 적극 개최하기 위해 수도권에 제2국제종합전시장을 설립키로 하고 경기도와 부지선정등을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내년 3월까지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 고시하는 한편 에어백등 50개 품목을 선정해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플랜트 건설공사 입찰제도와 관련, 기존의 건설업 면허외에 「플랜트 건설면허」를 신설해 중공업체도 플랜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인력 지원을 위해선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을 현행 석사이상에서 학사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發電所 122基 건설 – 통산부, 民資포함 총 46조5천억원 투자 –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모두 46조5천억원을 투자해 122기, 570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을 제외한 석탄화력 · LNG복합화력 · 양수발전소의 신규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민자를 유치해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경제성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전원구성이 되도록 LNG화력발전의 구성비를 확대하고 석탄화력은 하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신부와 한전은 이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공고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 수요관리전 최대 전력수요는 7085만kW, 2006년에는 6101만kW에 달하는 수요억제와 효율향상 등 수요관리를 감안할 경우 2010년 6564만kW, 2006년에는 5772만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같은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46조5천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19기 1930만kW, 석탄화력 29기 1550만kW, 석유화력 5기 126만kW, LNG화력 40기 1744만kW, 수력 및 기타 29기 350만kW등 모두 122기 570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원자력은 설비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탄화력 80만kW급은 사업의 효율성과 신규 격상 설비임을 감안해 민자발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석탄 50만kW급, LNG복합 45만kW급 및 양수 25만kW급은 전력사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건설 물량의 약 50%수준을 민자로 건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민자 3조 7747억원을 유치, 석탄화력 2기, LNG복합 11기, 양수 2기 등 모두 15기의 민자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LNG화력의 설비구성비를 93년 계획시의 17.6%에서 27.7%로 대폭 늘리고 석탄화력은 29.8%에서 27.3%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석탄신발전방식(CCT)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활용하기 위해 2005년에 30만kW급의 석탄신발전방식 건설을 추진하고 2003년에는 5천kW급 대체전원(풍력 · 태양광등)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 구성비는 95년 현재 27%에서 2010년 33% 수준으로 높여가기로 하고 기존설비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되 관련기술 및 인허가사항 등을 고려해 향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기반구축 · 中企지원 강화 – '96 예산에 반영된 통산부문 지원계획 –

통상산업부는 96년도 예산을 통해 산업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산업기술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산업지원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통산부는 우선 WTO체제에 맞춰 산업지원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지원 재정자금을 기존의 11개 기금 및 자금에서 5개 기금 및 자금으로 대폭 개편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산업지원 재정자금의 개편을 통해 현행 기금 및 자금을 기능별로 단순·통합화해 자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특정산업지원, 일반금융 성격의 자금은 축소조정하고 기술·물류·입지·환경 등 산업기반구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산업지원정책의 주안점도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력 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뒤 기술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96년도 산업지원 재정자금 중 산업기술개발 부문에 95년보다 36.4% 증가한 5666억원을 책정,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육성부문에 작년보다 36.7% 늘어난 6765억원을 책정했고 수출 및 투자진흥부문에 25.9% 증가한 2413억원을 산업기반 조성 부문에는 작년보다 8.2% 감소한 3172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주요 사업부문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기술개발부문의 경우 공통애로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 G7프로젝트 등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2323억1천만원을 투입한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기술개발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구축 등 기술 하부구조를 확충하기 위해 2026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중 373억 5천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업기반 조성부문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한 공동집배송단지 건립과 유통 합리화를 위한 물류합리화 · 자동화 · 정보화 등의 지원을 위한 유통합리화사업에 434억원을 지원 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제품구매 등을 위한 중소기업 기반조성사업에 2638억원을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시설개체사업에 대한 응자 등 생산성향상 사업에 1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설비투자 촉진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동화 · 공동판매망 구축 등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으로 14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에 대응해 환경보전 · 창업보육 및 지도 · 연수 등 기능별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경우 기술집약형 창업촉진과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한 전자 · 기계업종의 창업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7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도 4천억원을 책정, 지방재정과 연계지원하고 낙후 지역 우선지원등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수출 및 투자진흥부문의 경우 수출보험기금 출연액을 1400억원 확충,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진 흥을 지원하고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공단 설립지원을 위해 34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주요산업 부문별歳出예산

(단위:億원, %)

부 문 별	95예산	96예산			증감률
		계	일반	財特	
◦ 산업기술개발	4,153	5,666	3,121	2,545	36.4
- 공업기반기술 개발	1,811	2,323	2,323	-	28.3
- 산업기술기반 조성	202	374	374	-	85.1
- 첨단기술 · 시제품개발	1,745	2,545	-	2,545	45.8
- 국제산업기술협력	55	56	56	-	1.3
- 산업기술 연구기관	340	368	368	-	8.2
◦ 산업기반 조성	3,457	3,172	-	3,172	△8.2
- 유통합리화	277	434	-	434	56.9
- 중소기업기반 조성	3,180	2,638	-	2,638	△17.0
- 생산성향상	-	100	-	100	-
◦ 중소기업 육성	4,950	6,765	145	6,620	36.7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1,305	1,450	-	1,450	11.1
- 중소기업 창업지원	100	170	-	170	70.0
- 지방중소기업 육성	2,500	4,000	100	3,900	60.0
- 농공단지기업 지원	800	700	-	700	△12.5
- 중소기업 공제사업	200	400	-	400	100.0
- 중소기(협)중앙회	45	45	45	-	0.2
◦ 수출 및 투자진흥	1,916	2,413	1,113	1,300	25.9
- 수출보험기금	1,000	1,300	-	1,300	3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61	671	671	-	19.7
- 부산국제종합전시장건설	100	100	100	-	-
- 외국인투자전용공단	255	342	342	-	34.1

중고품 수입품 원칙적 허용

– 일반 기계류등 300개 제외한 모든 품목 –

'96년부터 일부 굴착기와 자동차, 준설선 · 오르간 · 대형 컬러TV, 일부 일반 기계류 등 HS번호 10단위를 기준으로 300여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중고품 수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수입이 금지되는 300여 중고품을 명시한 수출입공고 개정시안이 확정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품 수입제도는 기존의 ‘원칙불허, 예외 허용’에서 ‘원칙허용, 예외불허’로 바뀌며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300여 수입금지품목에는 일부 프린터, 현금자동지불기, 일부 자동차, 휴대용 무선전화기, 마이크로 버스, 일부 일반화물자동차, 스테이션웨건, 4천톤이상 벌크 선 등 1월까지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폴리지 않는 162개 품목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을 금지한 이들 네거티브 리스트의 300여 품목은 HS 10단위를 기준으로 약 1만 1천개 전 품목중 3%에 해당하며 나머지 1만 600여 품목의 수입은 자유롭게 된다.

통산부는 중고품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약 1천여 품목에 대해 포스티브 리스트를 고시, 이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계류·선박·자동차 등 수송기계, 첨단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머지 품목은 수입을 규제했으나 WTO 출범으로 이같은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수입을 허용케 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1만명 추가 도입 – 중소사업자에 우선 배정 –

통상산업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6년에 1만명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해 종업원 50명 이하의 중소사업자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최근 중소사업자에 대한 추가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재정경제원·외무부·법무부·노동부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기술연수생 추가도입규모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건의한 3만명 추가 도입은 곤란하고 1만명 선에서 추가도입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종업원 300인 이하인 기업에 배정되고 있는 인원배정 대상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정도가 소기업일수록 심하다는 판단아래 우선배정대상을 중소기업구조개선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인 이하의 중소사업자로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당초 20인 이하의 기업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10인 이하의 사업자는 기숙사 등 복지시설 미비로 오히려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50인 이하로 하기로 했다.

현재 종업원수의 10%에 해당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배정비율도 10%로 제한할 경우 사실상 인력지원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배정기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中企 조세감면범위 擴大 - '所有·經營독립요건기준' 신설 -

정부는 96년도 소득세법을 비롯한 13개 세법(내국세법)의 시행령개정(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5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에게 업종을 변경할 경우 양도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치와 관련, 현재는 업종을 전환하기 이전의 업종은 물론 전환하는 업종도 제조업이어야만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전환전의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전환하는 업종에 물류산업·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 감면범위를 넓혔다.

또 투자준비금(20%)을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등의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판정하는 기준과 관련, 업종기준을 변경하여 현재 대상이 되는 운수업 종(운수서비스업 제외)을 물류산업(운수서비스업 포함)으로 확대하고 연구 및 개발업, 유선방송업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추가했다.

특히 '소유·경영 독립요건 기준'을 신설, 대기업(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30% 이상이고 대기업이 임원임면등으로 실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96년부터 이같은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수입금액의 3~5%를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인정하는 업종으로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물류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추가했다.

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물류산업을 추가했다.

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에서 정부는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서울시·광역시 소재기업의 경우 75% 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이상, 군 이하 행정구역 소재기업의 경우 40%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현재는 기업의 소재지와는 달리 기업규모별로 정해 대기업의 경우 50% 이상, 중소기업 30%,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30%로 각각 정해져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96년부터 기업이 접대비를 사용할 때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될수 가중되는 셈이다.